

제 96호  
2015.06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I. 서론
- II.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
- III. 생활임금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 IV. 생활임금 도입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
- V.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가능성


**지방자치 FOCUS** 제96호(2015. 6.)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건위 · 최인수  
02-3488-7339, cigma@krila.re.kr, ischoi@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61)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rila.re.kr](http://www.krila.re.kr)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김건위 ·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I 서론

- 최근 국내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소득 불평등 현상, 증가하는 근로빈곤층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가 지자체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비, 문화비 및 지역의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을 말함
- 최저임금은 '적어도 이만큼은 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최소기준이지만 실제로 상당수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은 지급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 1달에 1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1인당 월평균 가계지출(148만 9천 원)의 68%수준에 해당됨
  - 서울 성북구 성북문화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한 김모 씨는 기본급 119만 5,480원, 급식보조비 12만 원 등을 더한 132만 4,880원이 김모 씨의 급여 총액이며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김 씨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121만 2,750원임
  - 작년 겨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인천공항 정규직 임금의 38.3%, 산업 평균정규직의 55.8% 수준임. 근속 수당도 없고, 고용이 빈번하게 갱신되다 보니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그들의 임금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때의 임금 그대로임
-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출발하였으며 생활임금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 도입한 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난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활임금제의 법적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생활임금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 주요 쟁점 및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II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

### 1) 생활임금의 개념

- 생활임금(生活賃金, living wage)은 노동자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함
  - 쉽게 설명하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즉 생활임금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말함
- 생활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여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는 정책이며,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음
  -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에 비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의 개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저소득층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소비성향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이러한 저소득층이 급여가 올라가면 상승액 대부분이 그대로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책임감이 향상되고 서비스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함

### 2)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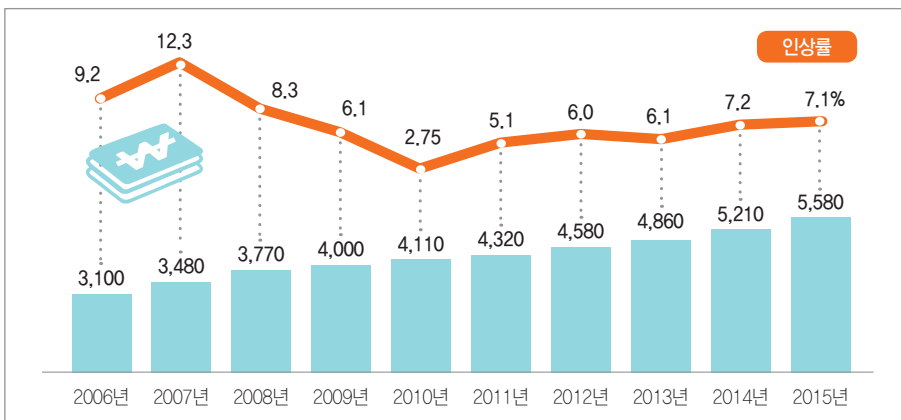
- 1990년대 경제위기 ·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의 불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임금상승 억제와 저임금 ·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이 심화됨
  -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수출 주도 세계화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하청계열화, 노동유연화(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등)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음
-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상위층 및 하위층은 증가하는 등 임금 · 소득의 양극화 및 불평등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심화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 원활하지 못한 소득 재분배 등의 요인에서 기인함
  - 국내 저임금 계층 비율은 2010년 25.9%로 OECD 22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46.62%에 해당함
  - 연봉 1억 원 이상 직장인이 '08년 195천 명에서 '12년 415천 명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상장사 동기임원의 평균 연봉액이 15억 원에 이룸(14.4. 국제청)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의 최고수준이 되어 지급되는 등 정작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저임금은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5.5% 수준에 불과하며, 1인 가구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계조차 어려움
  -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인데 직장인 평균 점심값 6,500원보다 1,000원이 모자라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 끼도 먹기가 어려운 게 현실임

- 시간당 5,580원, 월 116만 원가량인 현행 최저임금만으로는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약 167만 원)는 물론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단신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약 150만 원)조차 충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임

■ 최저임금제는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 국제수준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치는 등 매우 낮은 실정이며, 국내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나, 유럽연합이 권고하는 60%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



출처: 연합뉴스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그림 2〉 국가별 최저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빅맥의 개수



〈표 1〉 주요 국가의 실질 최저임금 비교

(단위 : 달러)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실질 최저임금 <sup>1)</sup>	3.06	10.86	8.16	7.87	6.49	4.29
구매력기준 최저임금 <sup>2)</sup>	4.49	8.88	5.53	8.00	6.49	4.24

※ 자료 : 2012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12.6.20.

- 낮은 최저임금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 증가하는 근로빈곤층 등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정체된 실질임금 수준의 정상화,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등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그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지난 2014년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제는 공론화 되었으며 서울시를 필두로 생활임금제가 도입됨(생활임금 조례 제정 · 시행)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환영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각국의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실질임금을 달러로 환산함(OECD, 2012.4 기준)

2)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실제 구매력(OECD, 2012.4 기준)



- 또한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III 생활임금 최근 동향 및 주요 쟁점

#### 1) 최근 동향

- 국내에서는 최저임금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고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현실
  - 또한 최저임금은 형식상 정책임금이나 사실상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교섭임금이며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어려움
- 최저임금제도가 내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운동 및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으로 생활임금이 대두됨
- 생활임금은 2012년 참여연대가 제안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서울 성북구, 노원구가 시행하였고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활임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현재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이며, 23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생활임금제도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으나,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 법안에는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표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정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표 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생활임금 관련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 (1)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 우려

- 일각에서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생활임금 도입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하고 결국 일시적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인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지자체들은 재정 안정과 생활임금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노원구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한 번에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점차적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재정 영향력을 줄이고 있음

- 노원구는 구청 서비스공단 소속 노동자 68명으로 시작해 2014년엔 도서관 저임금 노동자들까지 대상을 확장. 작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임\*\* 직원은 “재정상황을 생각하면 한 번에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웠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가면서 재정 타격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전함

- 성북구에서는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생활임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김\*\* 주무관은 “성북구는 행사 경비 등의 소모적인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함

■ 이에 생활임금제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생활임금제를 오랫동안 시행중인 미국 등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주면 인건비는 늘 수 있지만 복지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의 총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2) 생활임금은 일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준 최저임금

■ 생활임금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향된 금액으로 적정한 생계를 보장한다는 임금이라는 의미보다는 준 최저임금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 생활임금은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대비 130% 근방에 머물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 광산구는 120%, 서울시는 126%, 서울 노원구·성북구는 131% 수준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생활임금이 일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준 최저임금이라는 견해는 생활임금의 개념 정립과 제도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최저임금과의 명확한 구분 없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임금 역시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생활임금제 확산이 최저임금제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3)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한계

-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일부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직접고용에 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 민간영역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생활임금 도입이 상징적 의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용역·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소속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용역과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공공부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업체와 조달업체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함
  - 지자체 사업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것임
  - 생활임금의 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음)
- 또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성이 있는 대학이나 병원과 생활임금 적용 협약을 맺는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각 자치구와 자치단체, 중앙정부 최저임금까지 끌어올리는 기제가 되어야 함
  -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으로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4) 상위법에 대한 위반 논란

-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생활임금의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고 상위법에 이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조례가 가지는 강제력의 범위가 지역과 지자체 고용 노동자에게 한정되어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즉 국가가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는 한 생활임금조례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4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법적 분쟁을 우려해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망설이던 지자체의 고민도 해결될 것이며 생활임금제가 지금보다 확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 (5)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생활임금제가 호응을 얻으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여지가 생기자 기업들은 생활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함

■ 하지만 생활임금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

-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촉진되어 기업생산도 증가하고 장기침체 중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음

- 서울시 오현석 주무관은 “생활임금제는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도 부합되는, 내수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평가
- 한국노총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생활임금은 민생문제이면서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의 인권문제와도 연관된 것임

## IV 생활임금 도입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

### 1) 미국

- 미국에서는 1994년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서 최초의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음
  - 이 조례에 따라 시와 각종 계약을 맺는 모든 기업이 해당 노동자에게 6.10달러(당시 연방 최저임금은 4.25달러)를 지급하고,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1997년 미국은 이미 직접 고용 관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세수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많은 금액을 제시함

#### <미국의 생활임금 정의>

- 생활임금이란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각각 주당 35시간씩 일하는 것을 기준 삼아 최소한의 가족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각자의 시급을 의미
-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에는 주거비, 자녀 양육비, 식품비, 교통비, 옷 값, 의료보험료, 의약품비, 성인교육비, 예비비, 기타 공과금 및 소모품, 가구구입비 등 지출 등이 포함되지만, 대출 원금 상환 및 이자, 노후저축, 주택소유비, 자녀교육 위한 저축, 기본을 넘는 취미생활, 질병치료비, 노인부양비, 비상금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본생활비라는 개념

- 이후 생활임금운동은 빠른 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졌고, 그 결과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공공부문이 지향해야 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생활임금운동은 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월마트와 패스트푸드 등 저임금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생활 임금운동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존스홉킨스대학의 생활임금운동〉

- 볼티모어 시의 생활임금조례 제정 이후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민간 고용주인 존스홉킨스대학의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생활임금을 주도록 요구함
- 현재는 메릴랜드 주 남부에 있는 세인트메리스대학의 학생·교수·직원들이 “학교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사람(학장)이 받는 금액의 적어도 10분의 1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01년 하버드대학의 생활임금운동〉

- 2001년 하버드대학에서의 생활임금운동에서 학생들은 대학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 시간당 10.25달러 (당시 시간당 6.5달러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대학 행정관을 점거
- 3주에 걸친 연좌시위는 결국 대학 본부가 하도급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데 성과를 거둠
- 청소·경비·식당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생활임금운동에 학생·보스턴 지역사회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성과를 얻음

#### 〈월마트 노동자의 생활임금운동〉

- 2012년 6월 이후 ‘시간당 15달러의 생활임금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파업시위

####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운동〉

- 맥도널드·버거킹·웬디스 등에 고용돼 있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도 2012년 11월 뉴욕에서 시간당 15달러의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사상 첫 파업
- 1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

- 생활임금운동으로 2014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시급 7.25달러였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시급 10.10달러로 제시하였고, 공화당의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연방정부와 계약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행정명령으로 인상함
-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수준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정부는 주 단위의 최저임금을, 혹은 공공조달과 연계한 생활임금이란 제도로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2) 영국

- 런던시는 교회·학교·노조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2007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처음 병원에 도입되었던 생활임금이 대학·호텔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분위기임. 현재 보수당이 집권한 런던시를 비롯해 정부기관, 학교, 병원, 금융권 등 140여 개 기관이 생활임금을 채택하고 있음
  - 2012년부터 런던시가 '공정 고용'조항을 민간업자와의 계약 절차에 도입함
  - 런던시와 거래하는 민간업자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공공부문 임금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런던시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영국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6.08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인 8.3파운드(2012년 기준·약 1만 4,970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표 4〉 영국의 생활임금 책정방식 및 예시

구분	런던 생활임금	그 외 지역 생활임금
책정주체	런던시	러프버러대학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책정
생활임금 책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는 기본생활비(Basic Living Costs) 조사 : 가구당 최소의 그러나 용납 가능한 수준의 비용을 측정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li> <li>• 둘째는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방식 : 임금 중위값(Median)의 60%를 측정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프버러대학의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 노동자가 가난의 효과(건강 악화, 자녀 발달수준 저하, 사회적 배제 등)를 피하기 위해 벌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li> </ul>
생활임금 책정(예) 2012년 13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생활비 방식으로 시간당 7.10 파운드, 소득 분배 방식으로 7.80파운드가 각각 계산</li> <li>• 이 둘의 평균 7.45파운드가 빈곤선 임금(Poverty Threshold Wage)</li> <li>• 생활임금은 여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5%를 추가</li> <li>• 그래서 런던 생활임금은 시간당 8.55파운드(약 14,930원) 책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는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주당 37.5시간의 노동을 하고,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받고 있음을 전제</li> <li>• 또한 이들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차가 없으며, 연금기여분을 납부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써야 함</li> <li>• 이를 감안해서 계산된 금액이 7.45파운드(약 13,000원)</li> </ul>



- 2012년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천여 개 기업에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적용 하도록 함
  - 올림픽이 개최되는 곳에서 생기는 모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투자 혜택을 런던의 근로빈곤층에게도 주려는 목적으로 올림픽 조직위와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고용주는 '사회적 책임 계약 현장'에 서명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모든 직접 고용(계약) 직원에게 생활임금 지급 △20일의 유급휴가와 법정 휴일 부여 △노조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등을 보장해야 했으며 민간업체들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에 관련한 상세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올림픽 조직위에 제출해야 함
- 영국은 2011년 이후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2014년 기준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 보장에 동참함
  - 생활임금 보장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규범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영국 FTSE 100개 기업 중 생활임금 보장기업(Living Wage Employers)은 2011년 2개 사에서 2014년 18개 사로 증가하였으며, 준비하는 기업도 10개 사에 이룸
  - 생활임금 보장기업의 조건은 직접 고용한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직원의 임금도 생활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임

### 3) 국내

#### (1) 생활임금 시행 현황

- 국내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과 함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곳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는 22곳을 포함하여 23개의 조례가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표 5〉 생활임금 제정 및 운영현황(2015년 6월 기준)

순번	법령명	지역명	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경기도교육청생활임금조례	경기도교육청	제정	2014.10.21	2014.10.21	복지법무과
2	경기도생활임금조례	경기도	일부개정	2015.5.1	2015.5.1	공정경제과
	경기도생활임금조례시행규칙	경기도	제정	2015.3.6	2015.3.6	
3	광주광역시광산구생활임금조례	광산구	제정	2014.11.19	2014.11.19	행정지원과
4	광주광역시생활임금조례	광주광역시	제정	2015.5.15	2015.7.1	
5	광주광역시서구생활임금조례	서구	제정	2015.4.10	2015.4.10	일자리창출
6	대전광역시유성구생활임금조례	유성구	제정	2015.3.30	2015.3.30	일자리추진단
7	부천시생활임금조례	부천시	제정	2013.12.12	2013.12.12	고용노동팀
8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임금조례	구로구	제정	2015.3.26	2015.3.26	총무과
9	서울특별시노원구생활임금조례	노원구	제정	2014.8.18	2014.8.18	일자리경제과
10	서울특별시도봉구생활임금조례	도봉구	제정	2015.3.12	2015.3.12	일자리경제과
11	서울특별시동작구생활임금조례	동작구	제정	2015.2.26	2015.2.26	일자리경제담당관
12	서울특별시생활임금조례	서울특별시	제정	2015.1.2	2015.1.2	노동정책과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임금조례	서대문구	제정	2015.4.15	2015.7.1	일자리경제과
14	서울특별시성동구생활임금조례	성동구	제정	2015.5.21	2015.5.21	일자리정책과
15	서울특별시성북구생활임금조례	성북구	제정	2014.9.11	2014.9.11	일자리경제과
16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임금조례	은평구	제정	2015.5.7	2015.5.7	일자리정책과 협동조합정책팀
17	서울특별시종구생활임금조례	종구	제정	2014.12.31	2014.12.31	취업지원과
18	세종특별자치시생활임금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제정	2014.12.22	2014.12.22	일자리정책과
19	이천시생활임금조례	이천시	제정	2014.12.31	2014.12.31	기업지원과
20	인천광역시계양구생활임금조례	계양구	제정	2015.3.27	2016.1.1	지역경제과
21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임금조례	남동구	제정	2015.5.15	2015.5.15	일자리정책과
22	인천광역시부평구생활임금조례	부평구	제정	2015.1.5	2015.5.1	일자리기획단
23	전주시생활임금조례	전주시	제정	2014.12.30	2014.12.30	지역경제과
	전주시생활임금조례시행규칙	전주시	제정	2015.5.15	2015.5.15	지역경제과

■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인 대부분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0%를 넘어 자체수입으로 겨우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 지자체 재정 상황은 열악함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수입대비 인건비 지출비용이 100%를 넘어 지방세로 걷어 들이는 세금보다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높음

〈표 6〉 생활임금 시행중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현황(2014년 기준)

순번	자치단체	제/개정일	수입대비 인건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	지방세	
1	서울본청	2015.1.2	6.2	6.9	80.4
2	서울 동작구	2015.2.26	63.2	106.6	31.8
3	서울 구로구	2015.3.26	62.1	100.7	27.1
4	서울 서대문구	2015.4.15	79.1	126.3	28.4
5	서울 노원구	2014.8.18	92.2	141.9	17.2
6	서울 도봉구	2015.3.12	94.2	133.2	21.2
7	서울 성북구	2014.9.11	75.5	117.9	23.9
8	서울 중구	2014.12.31	45	67.4	63.5
9	인천 계양구	2015.3.27	67.9	100.3	19.5
10	인천 부평구	2015.1.5	55.8	78.7	20.8
11	광주 본청	2015.4.6	17.0	18.4	36.8
12	광주 광산구	2014.11.19	62.1	88.3	19.8
13	광주 서구	2015.4.10	78.5	115.3	20.6
14	대전 유성구	2015.3.20	42.9	53.4	30.4
15	세종특별자치시	2014.12.22	24.7	25.7	47.6
16	경기 본청	2014.7.11	7.9	8.4	48.7
17	경기 이천시	2014.12.31	32.3	37.8	38.7
18	경기 부천시	2013.12.12	31.5	36.7	41.6
19	전북 전주시	2014.12.30	43.6	52.4	28.9

## (2) 주요 지자체별 사례

### ①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생활임금 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들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인 생활(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을 누리고, 지속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 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 수준은 시급 6,687원으로 이는 최저임금보다 1,107원 많은 금액이며 서울시 평균가구원 수 3인을 기준으로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것임
  - 3인 가구 평균 소비액의 50%, 서울시 최소 주거기준(36㎡)에 필요한 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 물가상승률(1.6%)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출함
  - 사교육비를 반영한 이유는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현실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것”
-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키로 함
-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적용 우수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임
- 서울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지자체장의 권한(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한 것임
  - ‘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의 50%+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8%)’ 즉 평균임금의 58%를 생활임금으로 주는 방식임
  - 2013.1월 직접고용대상인 청소, 경비, 주차 등 저임금노동자에 ‘전국 최초 생활임금제’를 도입함
  - 생활임금액은 2014년 기준 시간당 생활임금 6,852원(현 최저임금 5,210원 대비 31%↑)이며 월평균 생활임금은 1,432,000원임

## ② 경기도

- 경기도는 여야가 상생과 통합, 협력의 연정정책을 택하고, 정책합의문(연정계약서)를 통해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경기도청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적용중인 '생활임금'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임
  - 경기도는 2013년 9월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가결, 재의결 무산을 거쳐 2014년 7월 도의회의 의장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함
  - 하지만 2014년 8월 경기도의 여야 연정정책 협의를 통해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을 합의함
- 경기도 부천시는 지역사회 합의(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을 최초로 제도화하여 시행하였으며 2014년 기준 공공부문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적 합의(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주민동의가 가능하고 제도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이 보장됨
  - 부천시는 시급 5,580원(최저임금보다 7.1% 높은 금액)부터 5,860원(도시 평균 근로자 임금의 40%) 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과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임

## ③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이 2015년 4월 28일 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속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공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등 광주광역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주시 광산구는 생활임금이 시급 6,080원(2015년 기준)으로 서울 성북·노원구의 7,150원, 서울시의 6,738원 보다는 낮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선(최저임금의 129%)으로 전국 지자체(140만 원 선) 중에서 가장 높음
  - 생활임금 유급 휴무일을 1일로 계산해 한달 209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만, 광산구는 유급 휴무일을 2일로 산정해 월 평균 248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책정함

### V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가능성

#### 1) 생활임금제도의 인프라 구축

- 생활임금에 관한 기본연구, 임금통계 시스템, 생활임금 결정절차 및 심의기구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생활임금에 따른 고용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생활임금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생활임금액 산정방법, 적용대상, 장기적인 전략 등의 긴밀한 협의체계가 필요함
  -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함
  - 또한 생활임금제 실행 및 확산을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생활임금 결정기준 표준안 마련

-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모호성에서 탈피하고 준 최저임금으로 기능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생활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표준안 없이 지자체 자율에 의한 방식을 지자체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1인 근로자(최저임금 기준)로 할 것인지 가구단위(최저생계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 1인 가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 및 주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를 전제로 산정하는 방안
- 4인 가구 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

- 또한 생활임금에 산정에는 기본급과 함께 교통비, 식대를 포함하여 수당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근거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 임금을 급격하게 상향하여 시행할 수 없을 지라도 생활임금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절한 결정기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단계적인 생활임금 상향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하한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생활임금은 지역실정과 지역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협의의 정도에 따라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지급을 약속하는 사회적 책임제도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은 지역사회구성원(노·사·정·시민)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하며, 지역 사회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3)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 생활임금 정책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민간영역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소속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용역과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공공부문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업체와 조달업체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함
-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업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음)
-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성이 있는 대학이나 병원과 생활임금 적용 협약을 맺는 등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각 자치구와 자치단체, 중앙정부 최저임금까지 끌어올리는 기제가 되어야 함
  -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제 적용 우수기업을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4)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생활임금제는 예산이 필요한 제도로써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함
- 지자체의 재정안정과 생활임금의 균형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첫째,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재정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음(우선 적용 후 확대)
  - 둘째, 각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시성 또는 낭비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을 합리화하여 생활임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 낭비되는 예산 사례

※ 보도블럭 교체비용 : 서울 ○○구(매년 50억 원), 경남 ○○시(매년 13억 원)

- 셋째 지자체에서는 빈곤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물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 예산으로 생활임금 제도의 적용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공공무문(조달, 위임)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이윤(예: 청소업체의 과도한 이윤 보장 등)을 줄이는 등 잘못된 조달정책을 개선하고, 근로자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소요는 거의 없음

- EPI는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생활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생활임금법의 실제 예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sup>3)</sup>

- 생활임금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야 하며, 무턱대고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임

## 5)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고려

- 생활임금제도가 일반화된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가정을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고 있음

- 54%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
-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노동자의 65%가 이득을 하나 이상 경험했다.
-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노동자 32%가 그들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었다.
-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8%가 재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런던 생활임금 보고서」(2012) 중에서

-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높여 삶의 질을 윤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선순환 할 수 있음

3) 전체 예산 1%의 1/10 이하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Thompson and Chapman, 2006)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촉진되어 기업생산도 증가하고 장기침체 중인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음
-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은 임금 삭감에 기초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저비용 경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기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생활임금은 각 경제주체에 민감한 사안으로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최저임금제와 같이 경제주체들에 민감한 사항으로 도입여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위성만으로 도입이 곤란함
  - 생활임금과 관련한 체계적 연구,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사회 내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임

## 〈참고문헌〉

- 강원노동문제연구회, 생활임금운동이란 무엇인가?, 춘천노동복지센터 생활임금 공동교육자료  
권순원 외,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10  
박광범 외, 생활임금 도입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2014  
이병희,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한국노동연구원, 2015.4.7  
양성욱, 생활임금제도의 시행현황 및 문제점, 바른사회시민회의, 2015.05  
정책토론회,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12.8.30  
정책토론회, 지방선거,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2014.5.14.  
정의영, 한국의 생활임금-현장의 목소리, 서울연구원, 생생리포트, 2015.3  
최봉,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해야, 서울연구원, 2015  
최봉,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연구, 서울연구원, 2013  
최봉 외,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3  
황선자, 생활임금운동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8-18  
황선자, 생활임금은 인권이다, 한겨레21, 제1003호, 2014.3.19  
황선자,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의 새로운 기준인가?, 노사쟁점인터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월간노사정 6월호  
황선자, 세계 주요도시 생활임금 도입현황과 효과, 전망, 서울경제, 2013 vol 120

